

남 동 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제1732호
2022년 12월 16일
금요일

공 고

○ 공 고 제 2 2 9 5 호 「남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총 무 과 2

회 람								
--------	--	--	--	--	--	--	--	--

발행 : 남동구

편집 : 홍보실

공 고

남동구 공고 제 2022 -2295호

「남동구 주민투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남 동 구 청 장

남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주민투표법」이 개정(2022. 4. 26. 공포)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 사항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외국민 관련 규정 정비 : (안 제2조제4항, 제8조제1항, 제9조)
-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 삭제 : (안 제3조)
-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 : (안 제4조)
-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 추가
: (안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 통·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 작성 : (안 제8조제2항)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정비
: (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개정 및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총무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편: (우)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총무과 / 전화: 453-2232, FAX 453-2189
-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참고사항

○ 「주민투표법」(2022. 4. 26. 개정)

남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3년 2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주민투표법」이 개정(2022. 4. 26. 공포)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재외국민 관련 규정 정비 : (안 제2조제4항, 제8조제1항, 제9조)
-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 삭제 : (안 제3조)
-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 : (안 제4조)
-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 추가
: (안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 통·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 작성 : (안 제8조제2항)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정비
: (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개정 및 신설)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주민투표법」 (2022. 4. 26. 개정)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구의 책무)”를 “(구청장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한다.

제3조 중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을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로, “사람”을 “외국인”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7조 중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을 “법 제10조제2항의”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성명”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 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일자

제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의 제목 “(청구인서명부의 제출)”을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주소나 거소”를 “생년월일, 주소”로, “생년월일, 청구의 대상 및 취지,”를 “청구의 대상, 취지 및”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청구인서명부”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법 제12조의2에 따라 남동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하고,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심의회의 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동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남동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구 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대표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4조(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해당 주민투표 청구건 심사 등을 위한 임명일 또는 위촉일로부터 해당 주민투표 청구건의 처리가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심의회의 회의 등) ① 심의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투표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20조(종전의 제13조) 제2항 본문 중 “동조”를 “같은 조”로, “14일이내”를 “14일 이내”로, “수리여부”를 “수리 여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간내”를 “기간 내”로, “결정을 하기”를 “결정이”로 한다.

제23조(종전의 제16조) 중 “법 제1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1항”을 “법 13조 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 실시구역 변경	[]신청 []필요없음			
	<변경 사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남동구청장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5. 주민투표 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 별지 제2호서식 】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남동구청장 (인)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 별지 제4호서식 】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남동구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남동구청장 (인)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 별지 제5호서식 】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 명

남동구 및 ○○○동(○책중 ○권)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1.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3. 남동구 및 ○○○동(○책중 ○권) 란에는 통·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통·반으로 작성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명 또는 날인	서명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 별지 제7호서식 】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남동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 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구의 책무) ① ~ ③ (생략) ④ 구청장은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u>재외국민 또는 외국인</u> 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u>외국인</u> ----- ----- ----- ----- ----- -----.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u>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남동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u> 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u>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u> ----- ----- ----- ----- ----- <u>외국인</u> ----- -----.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 · <u>분합, 사무소변경에 관한 사항</u> 2.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행정동의 구역변경과 폐치	<삭 제>

· 분합 (개정 2009. 6. 19, 일
부개정 2015. 10. 8, 2019. 6. 2
8., 2021.12.23.)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
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
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
한 사항

5.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
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그 밖
에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
을 듣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
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
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
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
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
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
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
----- 법
제10조제2항의 -----

-----.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
성) ① -----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
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

<신 설>

② 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 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생년월일,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일자

② -----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

-- 생년월일, 주소 -----
청구의 대상, 취지 및 -----

-----.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
-----.

② ~ ④ (생략)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구청장은 주민투표청구가 있으면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4. 그 밖에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의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심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남동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남동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구 의원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법

제12조의2에 따라 남동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단체를 말한다)대표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심의회는 해당 주민투표 절차가 종료된 때부터 별도의 조치없이 자동해촉한다.. (개정 2009. 6. 19, 전부개정 2017. 5. 10.)

⑥ 삭제

⑦ 삭제

⑧ 삭제

⑨ 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신 설>

제13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심의회의 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

<신 설>

<신 설>

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동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남동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구 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대표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4조(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해당 주민투표 청구건 심사 등을 위한 임명일 또는 위촉일로부터 해당 주민투표 청구건의 처리가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 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
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
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
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
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
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신 설>

<신 설>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심의회의 회의 등) ① 심의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투표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신 설>

제13조(처리기간) ① (생략)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동조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

제20조(처리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
같은 조 -----

----- 14일 이내

----- 수리 여부 -----

---. -----

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 · 제15조 (생략)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구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남동구 홈페이지)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

③ -----
----- 기간 내-----

결정이 -----

-----.

제21조 · 제22조 (현행 제14조 및 제15조와 같음)

제23조(공표방법 등) -----

----- 법
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

[참고자료]

□ 주민투표법

제5조(주민투표권) ① 18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 <개정 2009. 2. 12., 2016. 5. 29., 2022. 4. 26.>

1.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①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22. 4.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개정 2016. 5. 29., 2022. 4. 26.>

1.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 가. 예산 편성·의결 및 집행
 - 나. 회계·계약 및 재산관리
- 3의2.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4.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다만,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동일한 사항(그 사항과 취지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제10조(청구인대표자의 선정과 서명의 요청 등) ① 주민투표청구권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청구인대표자”라 함

다)를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청구인대표자는 인적사항과 주민투표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대표자는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때 제4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요청을 위하여 같은 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이용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6.>

②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대표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6.>

③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서명요청기간 동안 주민에게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이 제한되는 기간은 서명요청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서명을 갈음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같은 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 동안 주민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 4. 26.>

⑤ 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알릴 수 있다. <신설 2022. 4. 26.>

1. 전자서명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
2. 전자서명을 하는 방법 및 제7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철회방법

⑥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한 자가 그 서명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청구인서명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되기 전에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대표자는 즉시 청구인서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6.>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라 전자청구인서명부에 전자서명을 한 사람이 그 전자서명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자청구인서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에 제4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철회하여야 한다. <신설 2022. 4. 26.>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 서명(제4항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29조 및 제30조에서 같다) 요청,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2. 4. 26.>

[시행일: 2023. 4. 27.] 제10조제1항 후단, 제10조제2항 후단, 제10조제4항, 제10조제5

항, 제10조제6항, 제10조제7항, 제10조제8항

제12조(청구인서명부의 심사·확인 등) ①청구인대표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시·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군·구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청구인대표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자청구인서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6.>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명은 이를 무효로 한다. <개정 2016. 5. 29.>

1. 주민투표청구권자가 아닌 자의 서명
2.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3. 서명요청권이 없는 자의 요청에 의하여 행하여진 서명
4. 동일인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 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
5.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외의 기간에 행하여졌거나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요청이 제한되는 기간에 행하여진 서명
6. 강요·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서명
7. 이 법의 위임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식과 절차에 위배되는 서명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하고,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7일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6.>

④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이의신청인과 청구인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이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되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청구인대표자로 하여금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⑧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대

표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1. 유효한 서명의 총수(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요구한 때에는 그 보정된 서명을 포함한다)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2.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경우
3.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 이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방법 및 서명에 대한 심사·확인 등 주민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 4. 26.>

[시행일: 2023. 4. 27.] 제12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12조제9항

제12조의2(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제9조에 따른 주민투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심의회와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
2. 제12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3.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투표·전자개표의 실시
4. 그 밖에 심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의 의장은 시·도의 부시장·부지사, 시·군·구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하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된다. 이 경우 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4. 26.]

제13조(주민투표의 발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요지를 공표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1.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발의하겠다고 통지한 경우

2. 제9조제2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표한 날부터 7일 이내(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발의가 금지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투표일과 주민투표안을 공고함으로써 주민투표를 발의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청구의 목적을 수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주민투표를 발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4. 26.>

③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선거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동안에는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없다. <개정 2016. 5. 29.>

제16조(주민투표실시구역) ① 주민투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6.>

제26조(재투표 및 투표연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무효로 된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일은 늦어도 투표일전 7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그 판결에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초 투표에 사용된 투표인명부를 사용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투표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투표를 연기하거나 다시 투표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6.>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투표를 연기하는 경우에는 연기할 주민투표명과 연기사유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다시 투표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민투표명, 재지정 사유와 투표일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 4. 26.>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연기된 투표를 다시 진행하는 경우에는 투표일을 다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 4. 26.>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투표를 연기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투표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며, 다시 투표일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미 진행된 투표절차에 이어 계속하여야 한다. <신설 2022. 4. 26.>

⑦ 제1항에 따른 재투표, 제3항에 따른 투표 연기 및 투표일 재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 4. 26.>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법 제12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구성) ①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시장인 되고, 심의회의 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 인천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주민투표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4조(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해당 주민투표 청구건 심사 등을 위한 임명일 또는 위촉일로부터 해당 주민투표 청구건의 처리가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

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7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심의회의 회의 등) ① 심의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